

선원의 산업안전보건 적용기준에 관한 연구

김 영 진*

目 次

I. 서 론	IV. 선내 안전·보건 및 기준에 관한 고시
II. 선원에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련 국내법	V.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선내안전보건 적용기준
III. 산업안전보건법과 선원법과의 관계 (안전배려의무와 관련)	VI. 결 론

I. 서 론

해상에서 고용하는 상선과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서 위험한 직업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양에서의 특수한 환경은 육상 근로자와 명백히 다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어업은 광업, 건설업과 더불어 업무상 사고 재해 천인율¹⁾에서 수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높은 산업재해율을 보이는 직군임에도 불구하고 선원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의 충돌 및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특히 선내안전보건 기준 및 제도에 대하여 입법적 공백이 발생하여 왔다. 기존에 우리나라 선원법에도 제78조부터 제83조

■ 투고일자 : 2022년 11월 10일, 심사일자 : 2022년 12월 6일, 게재확정일자 : 2022년 12월 15일.

* 아주 노무법인, 공인노무사

1) 고용노동부, 「2019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문중기획, 2020, 21p

까지 해사노동협약 제4.4조의 수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특히 제79조 제2항에서 '선내안전보건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이에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더불어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고시'를 행정예고하였으며 그 내용은 해사노동협약 제4.3조를 반영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산업안전보건 적용기준에 대한 의견제시하고자 한다.

II. 선원에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련 국내법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선원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0조 후단 단서조항에서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이나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므로 위 단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모든 사업에 적용하지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동법 제3조)는 규정에 의하여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2조는 별표1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라목에서는 선박안전법이 적용되는 사업 중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을 제외한 사업에 한정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박안전법이 적용되는 선박운항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동법 제3호 나목과 관련해서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교육)과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의 규정을 적용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사업장)에 선원이 50명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시행령 별표1 제6호에서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안법의 규정 다수를 적용제외 토록 하고 있어서 사업에 관계없이 선박(사업장)에 상시 고용된 선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된다.²⁾

기타 동법 제4조에서는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고 하여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3. 선원법

선원법은 명시적으로 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선원법 제8장 식료와 위생, 제9장 소년선원과 여자선원에서는 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 78조에서 ‘선내 안전·보건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79조3)에서 ‘서내 안전·보건 및 사고 예방기준’을 규정하고 있

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업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제1호, 제21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제2절, 제29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0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 제38조, 제51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2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3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4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5조,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 제63조, 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65조, 제66조, 제72조, 제75조, 제88조,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60조(제21조제4항 및 제88조제5항과 관련되는 과정금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생략>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및 제30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 농업 나. 어업 <이하생략>	

다. 특히 제78조 제2항에서는 ‘선내안전보건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여 선원의 선내안전보건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사노동협약(MLC)에서 선원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제4.3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선원법 제78조 및 제79조에서 대부분 반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사항이 국제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선내 안전보건에 관하여 위 사항을 이행하도록 법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선박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을 받는 선박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수상운송업)에 종사하는 선박인 경우에는 산안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만 보트 및 선박건조업에 속하는 선박의 경우,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은 되지만 산안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제1호의 적용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박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적용 선박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5. 적용법의 문제점

전통적으로 선원의 경우 해상의 특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육상 근로자와 다르게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하여 ‘해사노동협약’이라는 특유의 법제로 규정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별도로 선원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선원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선원에게 노출된 특수한 경우를 고려하여

-
- 3) 1. 선원의 안전·건강 관련 교육훈련 및 위험성 평가 정책
 2. 선원의 직무상 사고·상해 및 질병(이하 “직무상 사고등”이라 한다)의 예방 조치
 3. 선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선내 프로그램
 4. 선내 안전저해요인의 검사·보고와 시정
 5. 선내 직무상 사고등의 조사 및 보고
 6. 선장과 선내 안전·건강담당자의 직무
 7. 선내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8.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선내안전보건에 관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 순서이고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수하게 다루어져야 할 영역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장에서 논의한다.

Ⅲ. 산업안전보건법과 선원법과 관계

1. 안전배려의무

(1) 의의 및 법적성질

안전배려의무는 상대방의 생명이나 건강, 신체, 재산을 위험요소로부터 배려해야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용자의 주의의무라고 할 수 있다⁴⁾.

대법원에서는 안전배려의무는 고용관계⁵⁾, 숙박계약, 여행계약, 근로자파견관계등으로 표현되며 여러 판례에서 위와 같은 용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안전배려의무를 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인 의무로 보고 있으며 특히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⁶⁾하고 있다.

(2) 선내안전보건과 안전배려의무

선박내에서도 선원의 안전배려의무가 존재하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당사자의 약정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규정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개별적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판례⁷⁾도 이러한 경우 선박 소유자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여 선원의 직종과 구체적 상황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선내안전보건기준은 선박 소유자가 부담해야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를 일반

4) 노동법실무연구회, 각주68, 289p

5)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6)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7)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근로자에게 비추어 본다면 사업주에게 강제한 의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공법상 의무 뿐만 아니라 사법상 의무라고 볼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 제2항이 법적 근거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후술한다.

2. 선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문제

(1) 문제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이 제외됨으로서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은 특별법적인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선원법의 적용제외 규정이 삭제되었고 이는 선원법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선박 중 선박 및 보트 건조업에 속한 선박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고 선박 및 보트 건조업에 속하지 않는 선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일부 적용받는 사업장이며 선박안전법의 적용이 제외된 어선 내 선원이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는 해석에 있어서 복잡하고 불합리적인 모순이 발생한다.

(2) 개선안

선박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조치를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정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관련부서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 그러므로 선원법이 적용되는 일부를 제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적인 기준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선박안전법과 관련되는 규정을 삭제해야 할 것이다.

IV. 선내 안전·보건 및 기준에 관한 고시

1. 최근 고시 제정

선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의 작성을 국가의 의무로 법제화 했으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규칙이 부재하였다. 그러나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과 함께 최근 행정규칙 안을 예고함으로서 선내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킬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는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비준과정에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의 일반의무가 선원법에 반영됨에 따라 선원들의 선내 안전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고시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뒤늦게나마 정부가 이를 고시로 규정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주요내용

주요내용을 개관하자면 아래와 같고 특이하거나 언급할만한 조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제2조 정의규정

제2조의 2. 2. “중대한 재해”란 조사를 필요로 하는 직무상 사고와 질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고 하여, 가. 1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환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으로 선박에서도 이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함으로서 선박소유자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선박소유자의 명확한 법적 책임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에서 ‘이 고시는 어선을 제외한 「선원법」 적용 선박과 해당 선박에 승무(乘務)하는 선원,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선원법에 해당하는 선원 뿐만 아니라 승무원에게도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선박소유자에게도 적용대상으로 명시하여 법적 책임을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안전대표자, 선내안전보건위원회 등 안전관리 체계

제7조에서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를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식을 보유한 사람을 육상조직의 안전보건관리자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해사안전법」 제46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로 임명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자 및 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선박소유자에게 임명권을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8조에서 안전보건관리자의 임무로 선박의 안전 및 보건활동 및 선원의 작업환경 및 복지개선에 관한 지원 등 광범위한 활동을 규정하고 있어 안전보건관리자의 임무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하고 있다.

제18조 선내안전보건위원회는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장을 필수적으로 구성하여 선박내 기관장의 특유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제20조에서 안전대표자와 선내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이에 관한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기타 수입감소 등 근로계약의 악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상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조직 및 회의체의 구성과 관련한 해사노동협약과 유사하게 다루어져 온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유사하게 구성하고 있다.

(4) 직무사고 보고조치

제22조에서 25조의 경우 직무상 사고시 선장 및 선박소유자가 각 지방청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중대한 재해 발생 시 안전저해요인 검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존 해양수산부에서 사고에 대해 신고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대상선박이 한정적이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신 규정을 통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 안전등 제반요인의 예방조치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해상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 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육상근로자와 통일성을 기하였다.

(5) 작업중 세부안전 및 위생기준, 진동 소음등 안전기준 마련

제31조 내지 제78조에서 작업 시 보호장비, 승하선 안전, 안전표지판, 조명, 작업 사전 승인제도 도입, 자체 안전기준 마련, 선내 위생관리, 진동 및 소음 기준 및 예방조치,

개인보호장비 지급 등 위생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으나 대상선박이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불명확했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와 항목을 유사하게 하여 통일성을 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6) 교육훈련

제79조 내지 제82조에서는 모든 선원에 대한 안전보건 자체교육 실시,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대표자의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 교육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소결

이상의 내용을 살펴본 바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재해방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정기적인 선원 근로감독관의 현장 감독 및 해사노동조합중서 인증검사 시 현장 확인 및 관리감독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행정부담 없이 집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V.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선내안전보건 적용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동법은 5인 이상의 상시 근무자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사업주와 동일하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로서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⁸⁾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불이행에 대해서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8)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정하고 있다.

선원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선내안전보건 관련 선박 소유자의 의무준수와 더불어 선장 및 선원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선박소유자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이에 대한 협력 의무를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주지하다시피 안전보건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아닌 기업을 처벌하고 사망을 예방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그 행위의 핵심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보건확보의무’를 명확하기 위해서는 선내 안전보건기준의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VI. 결 언

이 논문은 다음의 3가지 정도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이에 대한 추후논의를 기대하는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선원의 선내안전보건기준에 관하여 선원에게 적용되는 산업안전관련 국내법의 종류와 체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에서 해상의 특수한 법의 적용문제나 공백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론적 제언을 추가하였다.

둘째, 선내안전배려의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선원법의 논의를 추가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선내안전배려의무가 해상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논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논의하였다.

셋째, 선원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선내안전보건기준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까지 이에 대한 고시가 없어 법적공백이 있었다. 다행히도 최근에 이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였고 주요내용을 개관하였다. 하지만 추후에 선내안전보건기준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규율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규칙과 같이 선내안전보건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해야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창영, 「선원법해성」, 법문서, 2016
- 고용노동부, 「2016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문중기획, 2017
-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주해 I」, 박영사, 2014
- 전형배,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과제”, 「노동법학」, 한국노동법학회, 2015.9.
- 김기선·전영우, “선내안전보건 관련 선원의 법적 지위 연구”, 「해사법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2021. 7.
- 김기선, 「선내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 2022

해운통상법연구 제13권 제1호 (통권 제18호)

<국문초록>

선원의 산업안전보건 적용기준에 대하여 국내법상의 관계정립이 필수적이며 특히 안전배려의무와 관련하여 논의를 하였다. 선원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고시가 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해사노동협약의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이는 선내안전보건기준에 대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덧붙여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선내안전보건 적용기준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다.

주제어 : 선원의 산업안전보건, 선내안전배려의무, 선원의 중대재해, 선원법, 선원안전보건법, 선원의 안전

<Abstract>

A study on the application standards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f seafarers

Kim, Young Jin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relationship in domestic law regarding the application standards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f seafarers, and in particular, discussions were made regarding the duty of safety consideration. The notification was enac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79, Paragraph 2 of the Seafarers Act, and the main content i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3 of the Maritime Labor Convention, which will be the first step towards safety and health standards on board. In addition, we briefly looked at the application standards for onboard safety and health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Keywords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f seafarers, Obligation to consider safety on board, Serious disaster of a sailor, sailor law,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sailor's safety

